

제정 : 2005.11.10

기업지배구조헌장

2005.11.10

기
업
지
배
구
조
헌
장

목 차

전 문

제1장 주주

- 제1조 : 주주의 권리
- 제2조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제3조 : 주주의 책임

제2장 이사회

- 제4조 : 이사회의 기능
- 제5조 : 이사회의 구성
- 제6조 : 이사의 선임
- 제7조 : 사외이사
- 제8조 : 이사회의 운영
- 제9조 : 이사회의 위원회
- 제10조 : 이사의 의무
- 제11조 : 이사의 책임

제3장 감사기구

- 제12조 : 내부감사기구
- 제13조 : 외부감사인

제4장 이해관계자

- 제14조 : 이해관계자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제15조 : 기업경영권 시장
- 제16조 : 공시

대림산업 기업지배구조 현장

전 문

대림산업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경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21세기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현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주 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1. 이익분배 참여권
 2.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3.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 ② 합병,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경영진 또는 주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자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 사 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수준의 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대규모 자본지출의 승인
 -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승인
 -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승인
 - 기업인수합병 관련 주요 사항의 결정
 -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
 - 위험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
 - 정보공시의 감독
 - 기타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된 사항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절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둔다.

제6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후보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며, 경영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정기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의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록과 녹취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회사경영의 주체로서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권한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기구

제12조 (내부감사기구)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실질적 및 형식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시 회사의 부정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기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 ④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유(兼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회사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5조 (기업경영권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 ③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기업이 다른 기업과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다수의 외국인이 기업의 지배에 참가할 정도의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 사항은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은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⑦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⑧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